

장위11-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장위11-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「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신청 내용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,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24일
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

가. 공람기간 : 2026. 4. 24. ~ 2026. 5. 8.

나.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

- 성북구청 신속도시정비과 (성북구 보문로 168, ☎ 02-2241-2932)
- 장위 11-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(성북구 장위동 64-91번지 401호)

다. 공람내용 :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계 서류

라. 의견제출 :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

마.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

- 1) 사 업 명 칭 : 장위11-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
- 2) 사업시행자 : 장위11-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진갑
- 3) 사 업 위 치 : 성북구 장위동 68-833번지 일대
- 4) 시 행 기 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
- 5) 건축계획

구 분		내 용	비 고
대지 면적	구역면적	6,216.0㎡	
	기반시설 확보면적	214.0㎡	도 로
	대지면적	6,002.0㎡	
도시관리계획		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	
사업 개요	건폐율 및 용적률	33.10% / 249.72%	
	연 면 적	23,873.6755㎡	
	건축 규모	지하 2층 / 지상 15층(2개동)	
	용 도	공동주택 160세대(임대주택32세대) 및 근린생활시설	

바.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사항

- 대지면적 및 구역면적 변경
- 단위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면적 등 건축계획 변경
- 정비사업비 등 관리처분계획 변경

※ 본 사업시행계획은 유관부서(기관) 협의,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,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신속도시정비과(성북구 보문로 168, ☎ 02-2241-293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공 램 의 건 서

공 고 명 (사업명)	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(장위11-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)			
의견제출인	성 명 (개인/단체)		생년월일	
	주 소		전화번호	
의견 내용				
장위11-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람공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제 출 인 성북구청장 귀하 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				